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45
----------	-------

발의연월일 : 2019. 11. 12.

발의자 : 김종희 · 이만희 · 정운천

이양수 · 경대수 · 손금주

윤준호 · 김성찬 · 오영훈

장석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5호 중 “적재한”을 각각 “실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법률 제16513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13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약)	1. (현행과 같음)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u>경우에 한한다</u> .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 ----- ----- ----- ----- ----- <u>경우로</u> <u>한정한다</u> ----- ----- -----.
3. ~ 17. (생 약)	3. ~ 17. (현행과 같음)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 ----- ----- ----- ----- -----.
1. ~ 9. (생 약)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u>부의하는</u> 사항	10. ----- ----- ----- <u>회의에 부치는</u>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u> 중 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람</u> ----- -----.
1. (생 략)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u>자</u>	1. (현행과 같음) 2. ----- ----- <u>사람</u>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u>자</u>	3. ----- ----- <u>사람</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⑤ (생 략)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u>공익상</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 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 ----- ----- <u>공익을 위하여</u> -----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제8조(결격사유) ① ----- ----- -----.
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
1. (생 략)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	1. (현행과 같음) 2. -----

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생략)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  
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  
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  
를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

---

---

---

---

---

지나지-----

### 3. (현행과 같음)

4. -----  
-----  
-----  
-----  
지나지-----  
-----

### ② (현행과 같음)

(3) \_\_\_\_\_

\_\_\_\_\_

\_\_\_\_\_

<p>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u>적재한</u> 경우</p> <p>2. ~ 4. (생 략)</p> <p>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u>적재한</u> 경우</p> <p>6. (생 략)</p> <p>④ ~ ⑥ (생 략)</p> <p>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생 략)</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u>감안하여</u>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p>-----</p> <p>1. -----</p> <p>-----<u>실은</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p> <p>-----<u>실은</u>-----</p> <p>6.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u>고려하여</u>-----</p> <p>-----</p> <p>-----</p> <p>-----</p> <p>-----</p> <p>-----</p> <p>-----</p>
--	---



다.

⑤ • ⑥ (생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